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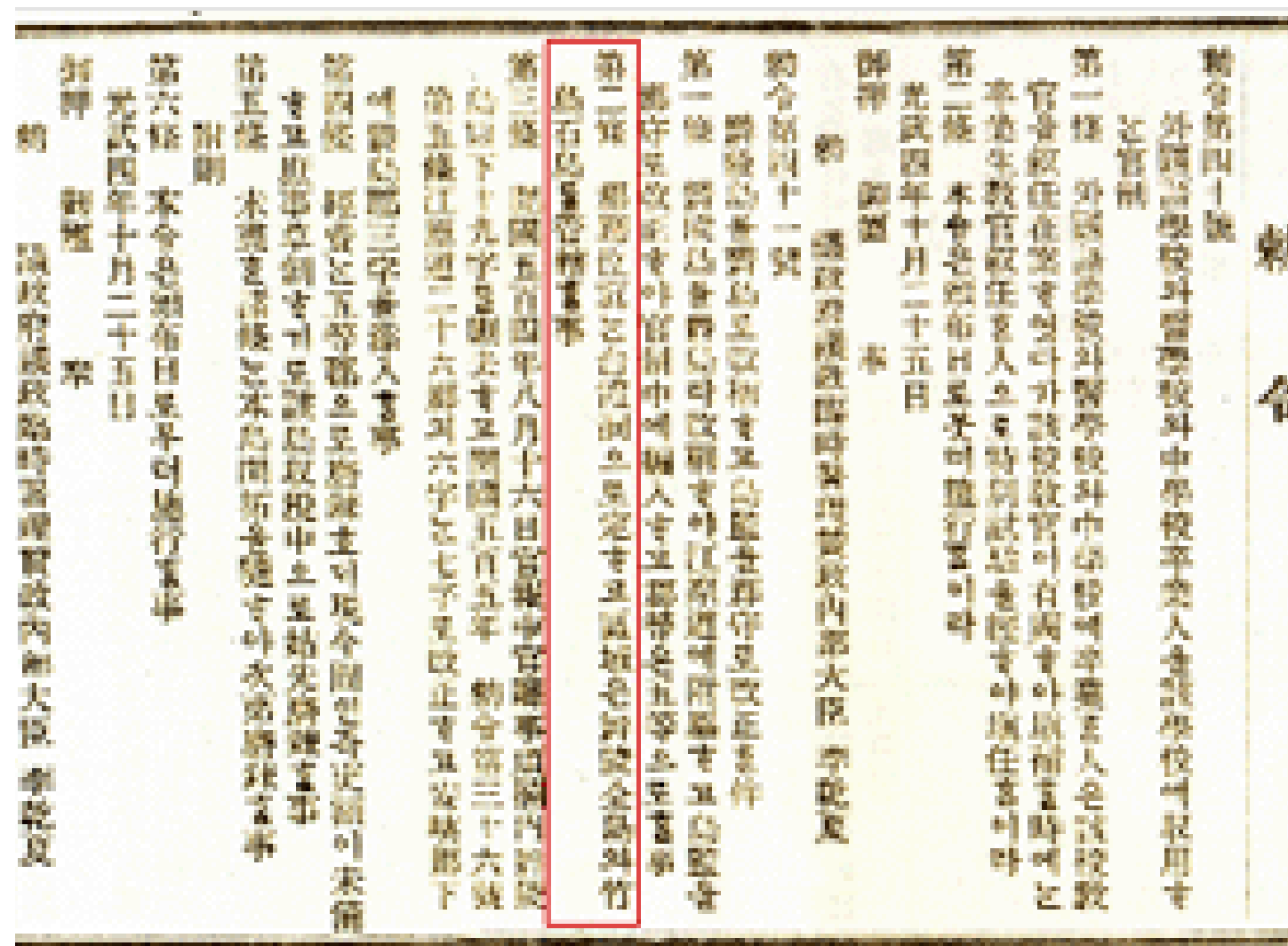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자료 6>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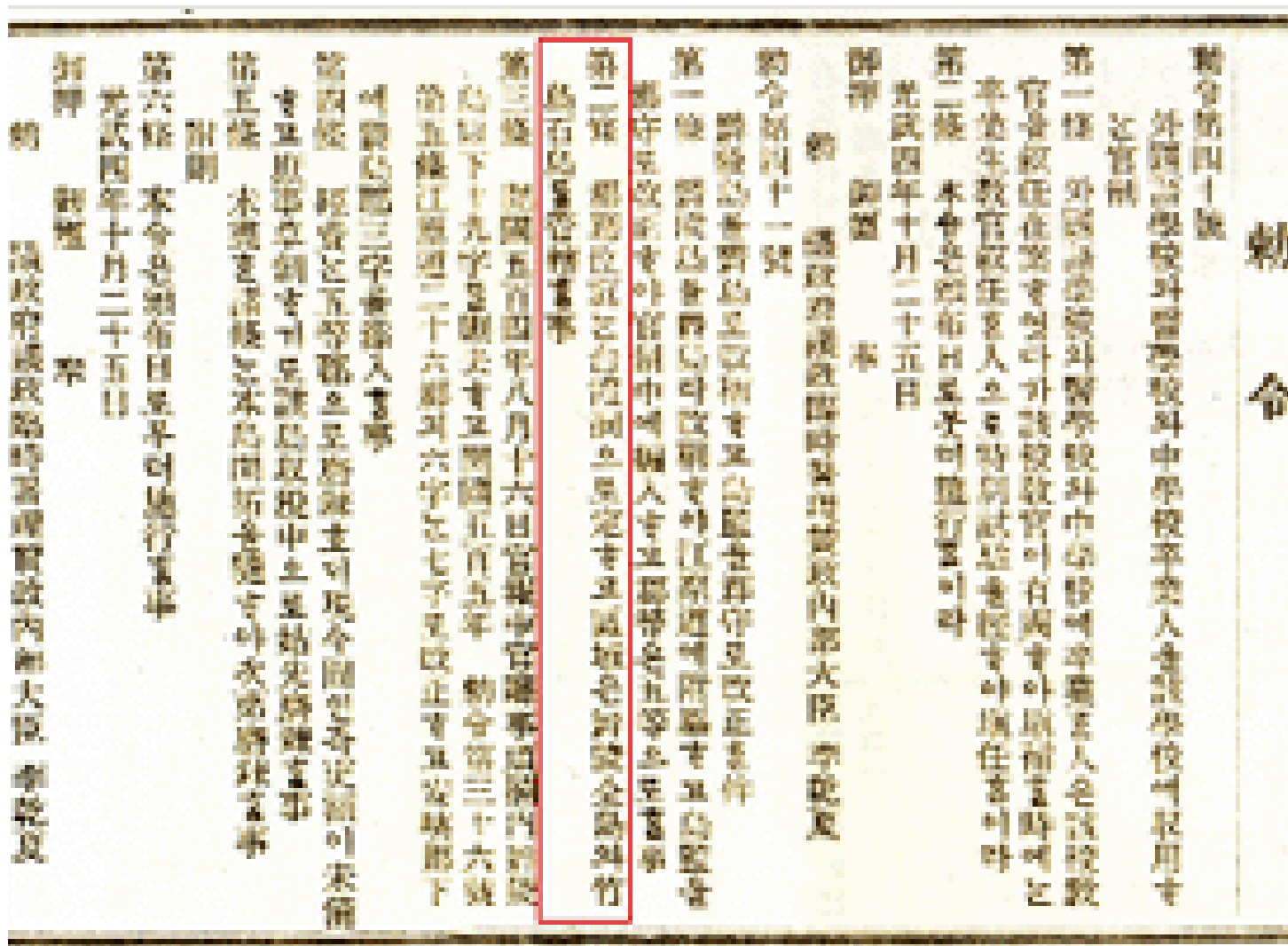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자료 6>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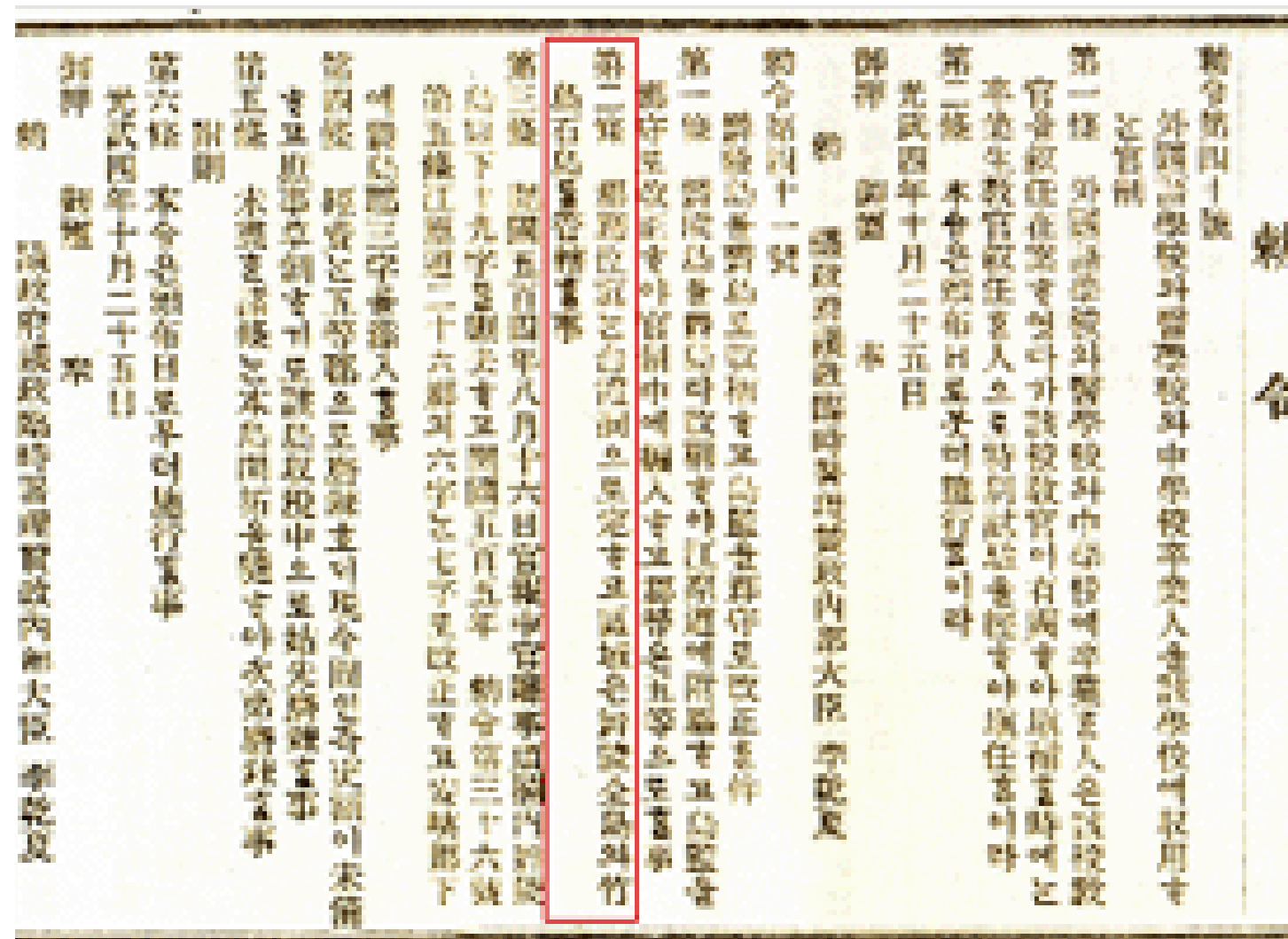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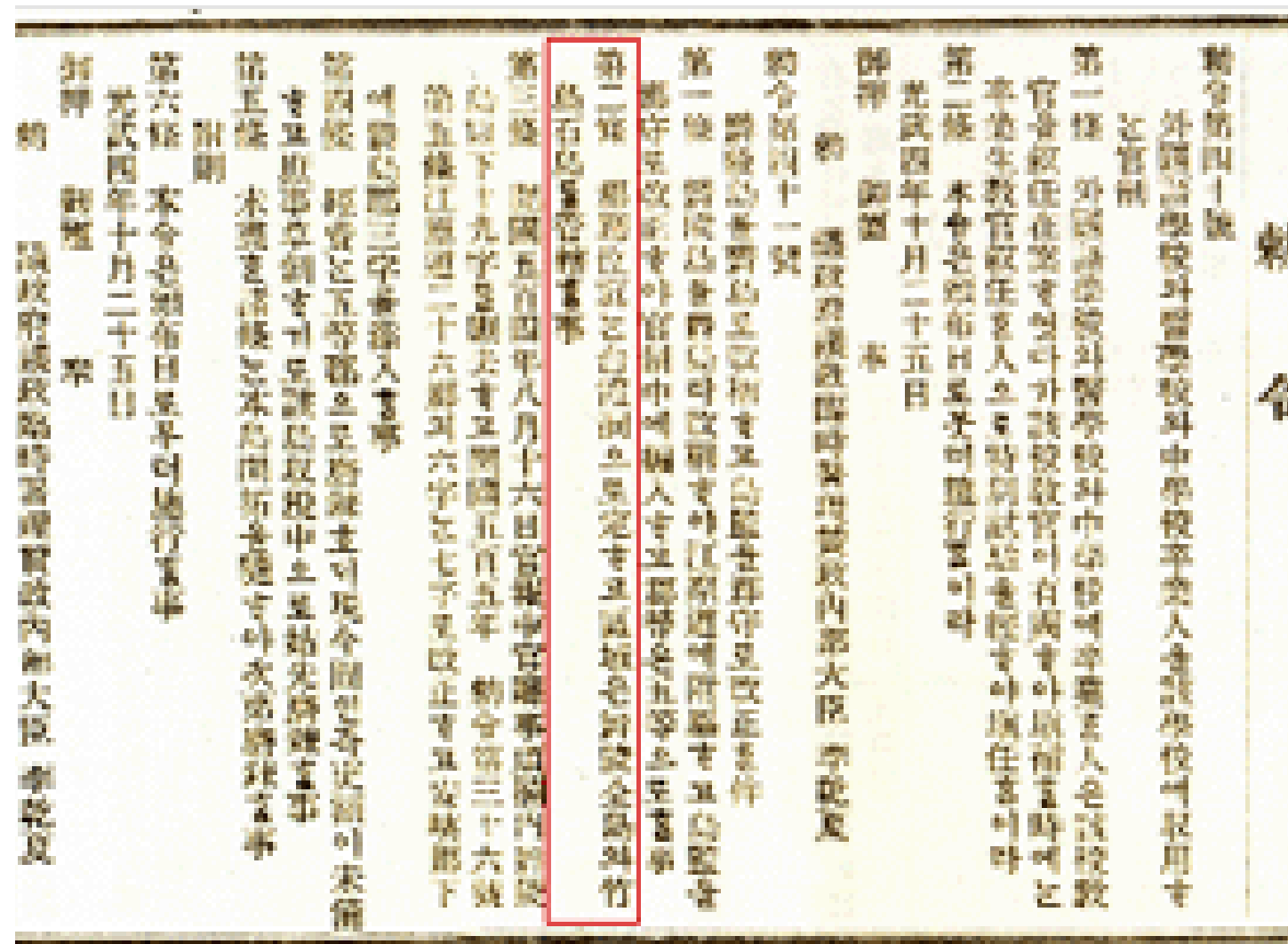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 義三郎)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었던 것이다.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되었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대일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자료 7>

일본영역도(『대일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
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를 적용하였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합국이 제2차 대전 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취급한 것은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침탈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UN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대일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자료8>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제막식(1950년 6월 8일) :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또한 독도가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는가 하면, 1952년 당시 거둬진 독도 폭격 등이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山本) 의원과 이시하라(石原) 외무차관과의 발언내용이다.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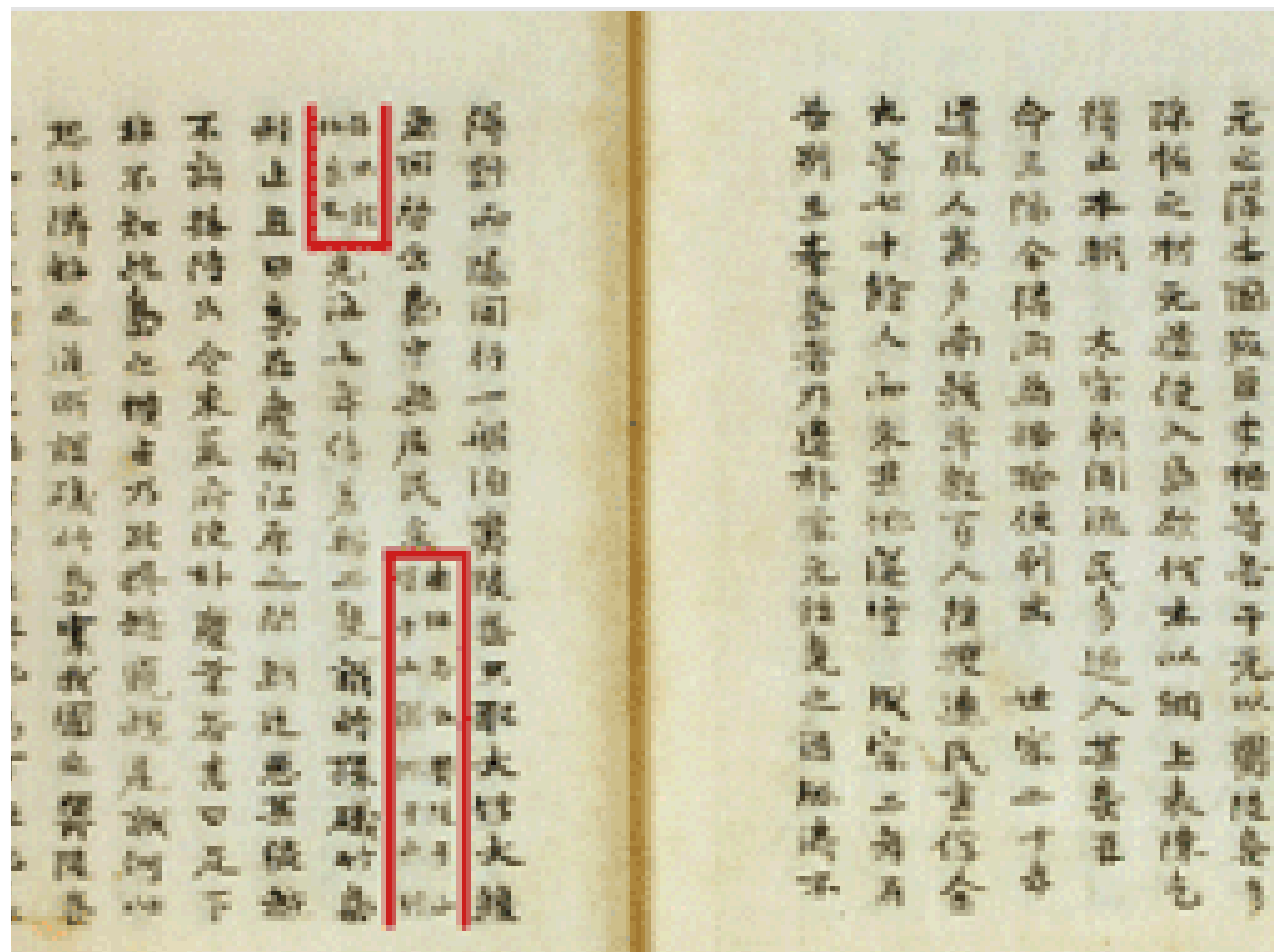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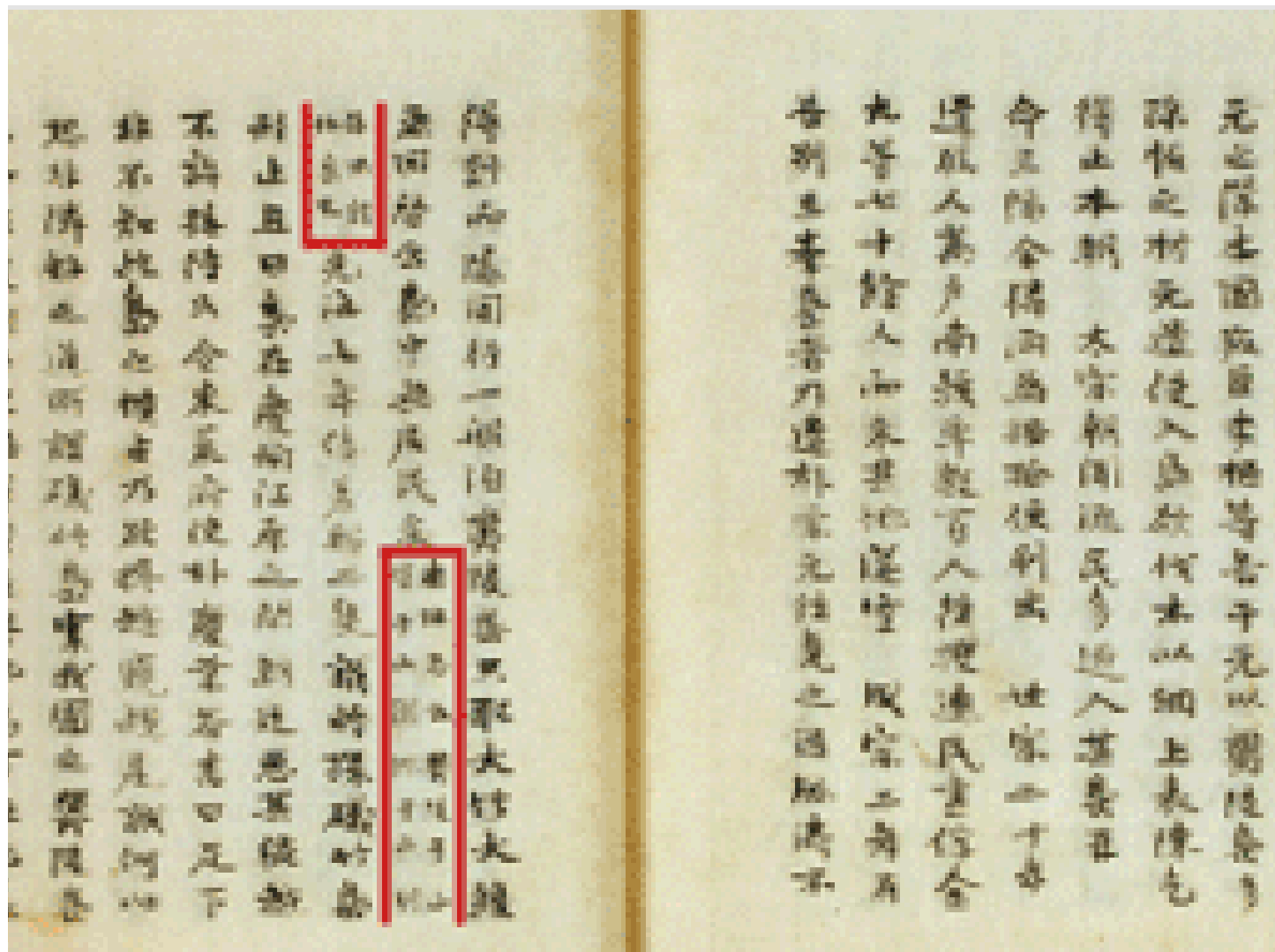
<자료9>

만기요람(1808년) :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江?)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明治)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

<자료10>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시금석, 독도

- 일본은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러·일 전쟁전까지 일본의 입장, '독도는 한국 땅'

- 러·일전쟁이한창이던 1904년 9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어업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같은 달 29일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에 대해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반대하였다.
-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초 메이지 정부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이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 독도는 조선의 영토!

- 1876.10월 시마네현 :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내무성에 질의
- 1877.3월 내무성 :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 결정
- 1877.3월 태정관(太政官) :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와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최종 결정
- 1877.4월 내무성 : 최종 결정문을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의 입장변화, '독도 강제 침탈'

- 1856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의해 제기된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 이른바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 틈만 나면 주창한 한국병탄 계획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 된다.
-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같은 해 9월과 11월 군함 니타카(新高)호와 쓰시마(對馬)호를 각각 파견하여 독도에 망루 건설 가능성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한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독도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일본, 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제로 편입!

러·일전쟁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대러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인 줄 알고'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온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에게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발언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의 입장변화, '독도 강제 침탈'

- 한편 1905년 5월 28일 인도양을 돌아온 러시아 발트함대가 울릉도를 최후 결전의 장소로 택한 일본 함대에 대패하여 결국 독도 근처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 이 해전에서의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 일본은 같은 해 8월 서둘러 독도망루를 준공한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로 그해 10월 15일 예상보다 빨리 종전되자 독도망루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10월 24일 철거된다. 하지만, 독도는 당시 일본의 언론에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기념 명소로까지 소개되었다.
- 일본은 종전 직후 곧바로 을사늑약(1905년 11월)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일신협약(1907년 7월)에 이은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를 마무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5년 일본 내각의 독도편입 결정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서곡이었던 셈이다.

되찾은 우리 땅! 그러나 일본의 침탈야욕 되 살어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되었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집요하게 다시 시작된다.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 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윌리엄 시볼드(W.J. Sebald)라는 친일인사를 통해서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다른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들고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가능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에서 비롯된 역사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다룰 대상도 아니다.

일본, 패소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된 의도!**

일본은 패소가 예견되는 남쿠릴열도(북방4개섬)나, 승소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조어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패소하더라도 현재보다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우리의 입장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자국의 욕심만 채운 제국주의 국가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으로서도 실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사부

이사부(異斯夫)

이사부는 성이 김씨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일명 태종(昞宗)이라고도 한다.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는] 아슬라주(阿瑟羅州)[현재의 강원도 강릉시] 군주가 되어 위국(于山國) [현재의 울릉도, 독도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 받기 어려우니 계략으로써 복속시킬 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 고 하였는데,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했다. 『삼국사기』 권4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는 541년(진흥왕 2) 병부령(丙部令)이 되어 562년까지 실권을 장악하며 동서남북으로 신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小國)이었으며, 우산국의 영역에 대해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松島(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문헌이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다.



안용복

안용복(安龍福)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속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속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박어둔 이하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 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 ·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에도막부의 쇼군(집정관)이 안용복에게 써준 서계를 빼앗고, 조선의 동래부에 인계하였다.

이후 안용복이 숙종 22년(1696) 봄에 해산물 채취를 나갔다가 또다시 일본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 내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다시 돗토리번주 앞에 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兩島既屬國),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에도막부의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 사실(史實)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기본캐릭터와 보조캐릭터



독도랑 캐릭터는 독도의 91개의 바위섬 중 동도와 서도를 남과 여로 의인화하여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서도는 그린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명랑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다. 동도는 옐로우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여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독도의 대표 식물인 왕해국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조 캐릭터는 독도랑 캐릭터와 함께 독도 관련 역사적 인물과 동식물 등을 보조 캐릭터로 개발해 독도의 문화적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 인물은 신라장군 이사부, 민간 외교관 안용복 장군,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있으며 동식물로는 바다사자 (일명 강치)와 갯이갈매기가 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들샘
22400593
청소년상담복지학과